

2021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편성 기준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 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1회 최대 12만원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공통 사항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사례비수령확인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특강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육지 - 제주 간 항공비 실비 지급 ※ 항공권 등급은 이코노미만 가능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공통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2시간 초과 강연시 한 시간은 50%만 지급 가능 (2등급 강사 하루 3시간 강의 시, 150,000*2시간+75,000원*1시간=375,000원) 추후 정산증빙시에 반드시 강사 이력서 첨부 必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등급</th><th>지급금액</th></tr></thead><tbody><tr><td rowspan="3">강사료</td><td>1등급※</td><td>250,000/시간</td></tr><tr><td>2등급※</td><td>150,000/시간</td></tr><tr><td>3등급※</td><td>100,000/시간</td></tr></tbody></table>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공통 사항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행사 진행자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등급</th><th>지급금액</th></tr></thead><tbody><tr><td rowspan="3">행사료</td><td>1등급※</td><td>200,000/시간</td></tr><tr><td>2등급※</td><td>150,000/시간</td></tr><tr><td>3등급※</td><td>100,000/시간</td></tr></tbody></table>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공통 사항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table><tr><th>구 분</th><th>등급</th><th>지급금액</th><th>비 고</th></tr><tr><td rowspan="3">학술 행사비</td><td>1등급※</td><td>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td><td rowspan="3">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td></tr><tr><td>2등급※</td><td>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td></tr><tr><td>3등급※</td><td>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td></tr></table>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이력서 제출 必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공통 사항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개발)	<table><tr><th>구 분</th><th>자격</th><th>역할</th><th>지급금액</th></tr><tr><td>책임 연구원</td><td>부교수 수준</td><td>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td><td>월 3,245,879원</td></tr><tr><td>연구원</td><td>대학 조교수 수준</td><td>책임연구원 보조</td><td>월 2,488,897원</td></tr><tr><td>연구 보조원</td><td>대학 조교 수준</td><td>통계처리, 번역 등</td><td>월 1,663,743원</td></tr><tr><td>보조원</td><td>-</td><td>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td><td>월 1,247,850원</td></tr></table>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table><tr><th rowspan="2">연구·교육 직명</th><th rowspan="2">경력연수</th><th colspan="3">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th><th colspan="3">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th></tr><tr><th>연구실적연 수</th><th>교육경력연 수</th><th>계</th><th>연구실적연 수</th><th>교육경력연 수</th><th>계</th></tr><tr><td>교수</td><td></td><td>4년</td><td>6년</td><td>10년</td><td>5년</td><td>8년</td><td>13년</td></tr><tr><td>부교수</td><td></td><td>3년</td><td>4년</td><td>7년</td><td>4년</td><td>6년</td><td>10년</td></tr><tr><td>조교수</td><td></td><td>2년</td><td>2년</td><td>4년</td><td>3년</td><td>4년</td><td>7년</td></tr><tr><td>강사</td><td></td><td>1년</td><td>1년</td><td>2년</td><td>1년</td><td>2년</td><td>3년</td></tr><tr><td>조교</td><td></td><td colspan="6">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td></tr></table> ※ 연구원 위촉시 본 경력기준에 준하여 역할별 위촉 권장	구 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 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45,879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88,897원	연구 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63,743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7,850원	연구·교육 직명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 수	교육경력연 수	계	연구실적연 수	교육경력연 수	계	교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교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강사		1년	1년	2년	1년	2년	3년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꿈다락 기획공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 유아문화 예술교육 지원만 편성 가능
구 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 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45,879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88,897원																																																																											
연구 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63,743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7,850원																																																																											
연구·교육 직명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 수	교육경력연 수	계	연구실적연 수	교육경력연 수	계																																																																							
교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교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강사		1년	1년	2년	1년	2년	3년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운영비 (210)		심사 및 자문료	<table><tr><th>구 분</th><th>등급</th><th>지급금액</th><th>비 고</th></tr><tr><td rowspan="3">심사료 및 자문료</td><td>1등급</td><td rowspan="2">200,000원</td><td rowspan="3">•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td></tr><tr><td>2등급</td></tr><tr><td>3등급</td><td>100,000원</td></tr></table>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공통 사항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번역료 및 감수료	<table><tr><th>구 분</th><th>지급금액</th></tr><tr><td rowspan="4">번역료</td><td>○ 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td></tr><tr><td>○ 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td></tr><tr><td>○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td></tr><tr><td>○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td></tr><tr><td>감수료</td><td>○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td></tr></table>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 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공통 사항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 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table><tr><th>구 분</th><th>등급</th><th>지급금액</th><th>비 고</th></tr><tr><td rowspan="3">편곡</td><td>1등급</td><td>500,000원/곡</td><td>*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td></tr><tr><td>2등급</td><td>400,000원/곡</td><td>*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td></tr><tr><td>3등급</td><td>300,000원/곡</td><td>*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td></tr><tr><td>작곡</td><td colspan="3">*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td></tr><tr><td>감수료</td><td>등급무관</td><td>50,000원</td><td>•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td></tr></table>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2등급	400,000원/곡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3등급	300,000원/곡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공통 사항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2등급	400,000원/곡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3등급	300,000원/곡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기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공통 사항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팸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제작관련 사례비로 개인에게 지급불가(디자인비 명목하에 사례비 집행 금지)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공통 사항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백만원 이상 집행시 반드시 비교 견적서 (2곳) 포함 ○ 조달청 기준 참고			공통 사항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table><tr><th>기준금액</th><th>수수료</th></tr><tr><td>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td><td>290,000</td></tr><tr><td>3천만원~ 4천만원 미만</td><td>346,000</td></tr></table> ※ 2021년 6월 이후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기준금액	수수료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	3천만원~ 4천만원 미만	346,000	공통 사항																
기준금액	수수료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																									
3천만원~ 4천만원 미만	346,000																									
공동 사업비 (필수)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공동사업비 1식*1,000,000원			공통 사항																						
기획 연구비 (필수)	○ 자체 역량강화 활동비 1식*1,000,000원			공통 사항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쿼 서비스, 행사 보험료 등	공통 사항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매 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 하여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공통 사항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2곳) 시행	공통 사항																	
여비 (220)	국내여비 (01)	여비 기준 <table><tr><th>구</th><th>분</th><th>내</th><th>역</th><th>지급방법</th><th>지급액</th></tr><tr><td rowspan="2">도외출장</td><td colspan="2">교통비</td><td>실비</td><td></td><td>· 항공료, 승선료 지급 · 유류비 및 택시비, 렌트카,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비 지출불가</td></tr><tr><td colspan="2">숙박비</td><td>실비 (1박당, 1인 기준)</td><td></td><td>·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td></tr></table> ※ 반드시 여비 지출 전 담당자와 논의 후 지출할 것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도외출장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도외출장	교통비		실비		· 항공료, 승선료 지급 · 유류비 및 택시비, 렌트카,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비 지출불가	숙박비		실비 (1박당, 1인 기준)		·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공통 사항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도외출장	교통비		실비		· 항공료, 승선료 지급 · 유류비 및 택시비, 렌트카,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비 지출불가															
	숙박비		실비 (1박당, 1인 기준)		·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3,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3,000원×100명×2식=600,000원 - 회의식비 : 20,000원×100명×2식=4,000,000원 ※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이상일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회의식비 집행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공통 사항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70,000원 (1인)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적용 시간×최저임금(8,720원), 백원단위 올림 ex)3시간×8,720=26,160 → 27,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																	